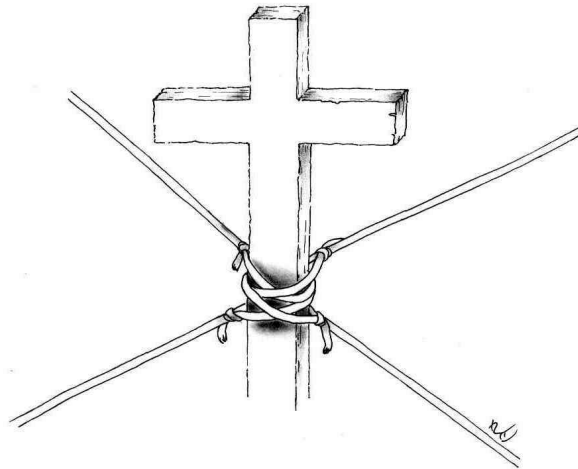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게 모범을!

2013년 깨끗한 총회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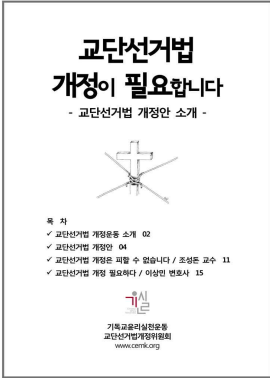
1. 깨끗한 총회를 위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2. 한국교회 신뢰회복의 첫 걸음은 '세습방지법'의 제정입니다.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깨끗한 총회를 위해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는 이유는 교단선거법이 모호하기 때문
 세상에 비교해도 손색없고, 교단현실까지 반영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2011년에 목회자와 법률가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김고광·수표교교회 원로목사)를 발족했습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면서 교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왼쪽 표지그림) 마련해 한국교계에 제안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크게 1)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강화 2)위반 시의 조치 마련 3)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윤실이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안'**과 예상통합 교단의 선거관리규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는 비교적 상세히 마련해 놓았으나,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미약하고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장로교 주요교단 선거규정 ... 기윤실 분석

“처벌 없고 공정성 취약”

선관위, 미흡한 부분들 보완 위해 의견 수렴 중

올해도 본교단을 포함한 교계의 대부분 교단 및 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계 선거가 치러질 때면 항상 금권선거 및 불법·탈법에 대한 논란으로 각 교단마다 내용을 심하게 알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법선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교계는 그동안 자체적인 자정의 노력을 펼쳐왔으나 아직도 불법선거는 정작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계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다.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선출 방식의 미흡함 보다는 교단 선거법에 불법선거를 규정하는 조항 미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단 선거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홍정길)이 지난 6월, 장로교 주요교단(본교단, 예장 합동, 예장 고신)의 선거규정을 분석,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표 참조〉
 먼저, 본교단의 선거법을 살펴 보면 선거법 위반 시 조치와 공공

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단 선거법에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권징사유로 명시하지 않았고, 고발 및 기소가 의무화되지 않고 있으며, 재판국이 신속한 판결을 해야 할 의무도 없다. 이외에도 당선 무효 조항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당선 무효 시 대책 수립이 없고, 피선거권 제한, 벌금 등의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취약점으로 지적된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부분도 선거비용 개인부담의 원칙이나 선관위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며,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보장 등의 규정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여러 항목에 대해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본교단은 기부 행위 및 매수 금지, 후보자 매수 금지, 허위사실공표 금지, 광고 금지, 집단적인 의사 표명 금지, 강사 초빙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담례를 하

거나 교회를 개별 방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본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수을 목사는 "선거법에 대해 위원들도 위반시 조치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며, "현재 위원회에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정취해 논의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장 합동과 예장 고신의 선거법도 본교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장 합동의 경우는 본교단 선거법에는 없는 당선무효 조항, 당선 무효시 대책, 피선거권제한, 벌금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본교단에 있는 '허위사실공표 금지', '집단적인 의사 표명 금지' 등은 없었다.

예장 고신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본교단과 같았으나 '교회 개별 방문 금지'에 관련된 조항만 가지가 더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지	세부조항	본교단	예장 합동	예장 고신	기윤실 개정안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	기부행위 및 매수 금지	○	○	○	○
	후보자 매수 금지	○	○	○	○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후보자 외)	×	×	×	○
	경위사실공표 금지	○	×	○	○
	담례 금지	×	×	×	○
	광고 등 금지	○	○	○	○
	교회 개별 방문 금지	×	×	○	○
	집단적인 의사 표명 및 금지	○	×	○	○
	강사 초빙 등의 제한	○	○	○	○
	권징사유로 명시	×	×	×	○
위반 시의 조치	고발 및 기소의 의무화	×	×	×	○
	재판국의 신속한 판결	×	×	×	○
	당선 무효 조항	×	○	×	○
	당선 무효시 대책	×	○	×	○
	피선거권 제한	×	○	×	○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선거비용 개인부담	×	×	×	○
	선관위 중립성 보장 방안(의무인사 명명)	×	×	×	○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보장	×	×	×	○

그러나 세 교단 모두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 부분인 '선거비용 개인부담', '선관위 중립성 보장 방안', '신고자 포상금 및 비밀보장'에 관한 조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기윤실 교회사회문화연구원장인 조성돈 교수(삼천선학대학원대학교)는 "교회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보니 절차도 무시되고 공적으로 검증되지 못할 일들이 나타나곤 한다"며, "이제 사회가 변한만큼 교회도 변화되어야 하고, 명확한 선거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윤실은 이번 장로교단 선거규정에 대한 조사를 발표함과 동시에 향후 각 교단들이 선거법을 개정할 때까지 다방면의 노력을

기윤실은 이번 장로교단 선거규정에 대한 조사를 발표함과 동시에 향후 각 교단들이 선거법을 개정할 때까지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각 교단마다의 문화와 전통,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기윤실이 제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선거법이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제정하고,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금권선거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처벌규정도 강화하면서 공명선거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한 것과는 달리 교계는 아직도 불법선거를 규정하는 조항 및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심각하게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교단들이 보다 명확한 선거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 교인들의 공감대일 것이다.

표현도 hmpyo@pckworld.com

▲ 한국기독교보 제2899호(2013년 5월 18일) 기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모범이 되는 교단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선거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윤실은 앞으로 각 교단이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총회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안

- 교단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회복의 첫 걸음은 '세습방지법'의 제정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교회세습'입니다

사람들은 북한의 권력 세습이나 재벌의 경영권 세습처럼 교회 세습에도 부정적입니다



북한의 권력 세습

굶주리는 사람들, 국제사회에서 고립



재벌의 경영권 세습

불법, 탈법, 불평등한 사회



교회 세습

교회 신뢰도 하락, 선교에 방해

교회 사유화의 산물로 여겨지는 목회세습. 그 단어의 민감성과 부정적 어감이 만들어내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습에 대한 한국 교회 전반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아들로 이어지는 목회 승계가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돕는 여러 사례도 나온바 있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수만, 수천 명의 성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부터 300~500개의 중소형교회까지 경상비 2억~3억 원 이상인 교회라면 쉽게 세습을 결정하는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2013년 9월 1일자 기사 중)

한국교회 신뢰도

17.6%



10명 중 채 2명도 안 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신뢰도 여론조사

담임목사직 세습반대

목회자 **87.7%**

평신도 **61.6%**

평신도 중 무관심 34.4%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2012년 교회세습 여론
인식연구 조사

세습방지법 통과

87.2%

압도적 찬성

한국장로신문

2013년 전국장로수련회
참가자 702명 설문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회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세습방지법"의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한국교회의 대표교단인 예장 통합이 이번 제98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켜, 한국교회 전체와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습방지법

- 이번 98회기 총회에는 9개 노회에서 '세습방지법'을 제정해 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헌의안이 통과되도록 총회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서울노회, 서울강동노회, 경기노회, 대전노회, 순천노회, 경남노회, 대구동남노회, 경서노회, 평양노회)
- 예장 통합 외에도 예장 고신, 예장 합신, 기장 교단 총회에 '세습방지법' 관련 헌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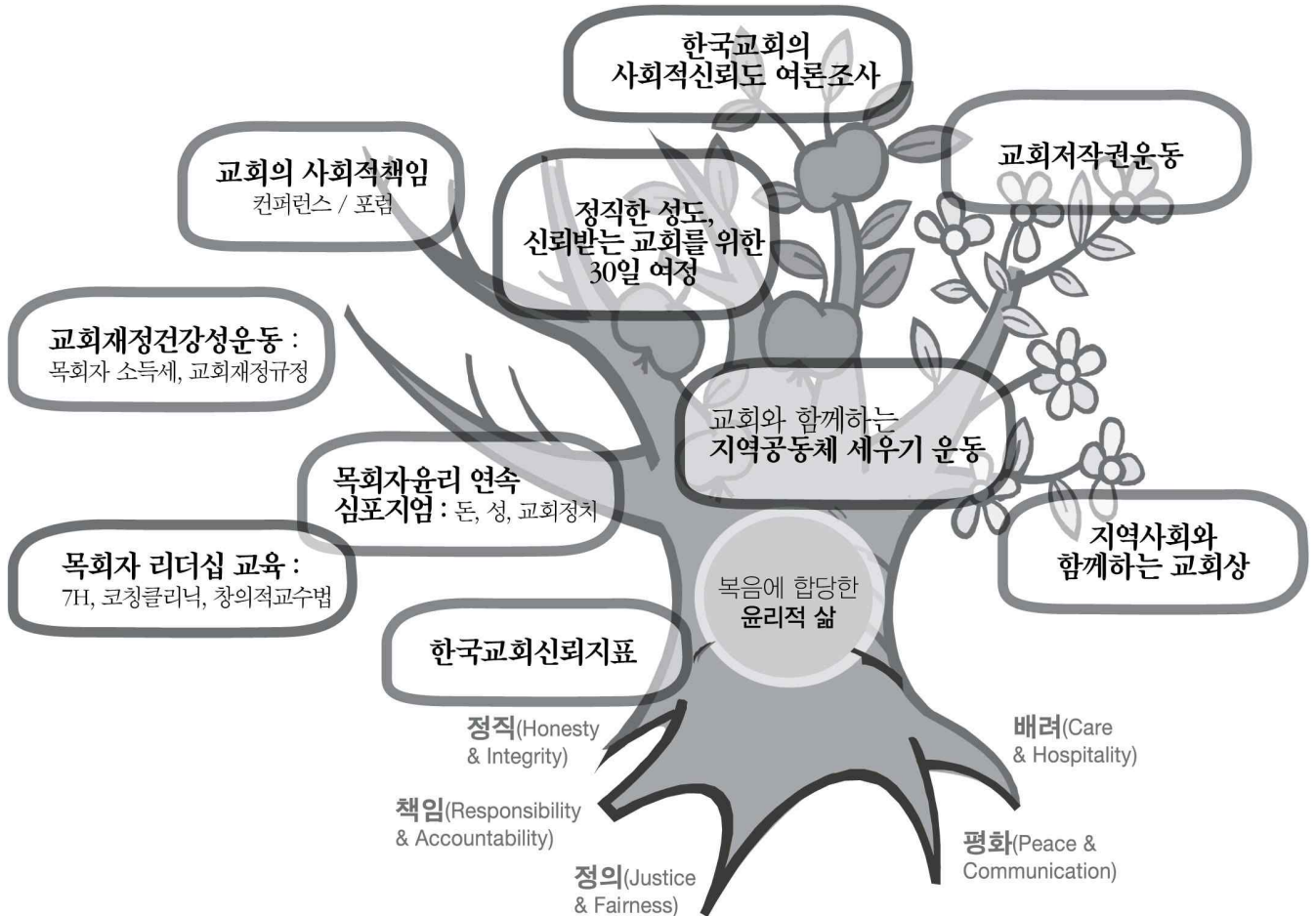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신뢰받는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1987년 창립된 기독교시민운동입니다.



기윤실 소개영상 보기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소개

기윤실은 교회가 윤리성과 공공성의 회복을 통해 성도와 한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섬겨나가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 자료실과 기윤실 블로그(<http://trusti.tistory.com>)에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단행본 제외)

전국기윤실협의회

기윤실은 네트워크 운동으로 기독교윤리를 각 지역 현안에 맞게 전개하기 위해 지역기윤실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구	053-959-4628	dgcemk@daum.net	익산	010-8442-1091	worship4620@hanmail.net
	대구 북구 대현동 258-6 2층			전북 익산시 남중동 375-292 새소망정형외과 2층	
대전	042-256-5183	dopriest@naver.com	인천	010-8961-8351	joejunjoa@hanmail.net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5층 504-나호			인천 남구 용현4동 185-2 대학마을교회	
부산	051-462-1558	mento123@hanmail.net	전주	063-237-1206	kyb0191@hanmail.net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7 YWCA 305호			전북 임실군 신덕면 조월리 359번지 삼덕교회	
서울	02-794-6200	cemk@hanmail.net	진주	055-747-1484	6671mee@hanmail.net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경남 진주시 본성동 6-13 모티브엔틱가구점 3층	
여수	061-690-4160	jc1877@hanmail.net	청주	043-274-5852	cjgjyunsil@hanmail.net
	전남 여수시 충무1길 14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5-37 2층	
울산	052-282-0691	007kkum@hanmail.net	제주(준)	010-9744-1477	hymn4747@hanmail.net
	울산시 북구 천곡동 527 우리들교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토산중앙로 68-3	